[UCI]I804:24011-200000238525

2009년 8월

석사학위논문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현황과 관련 변인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이 은 영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현황과 관련 변인 연구

The Current State and Related Variables of Sexual Violence among Female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Honam Region

2009 년 8 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이 은 영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현황과 관련변인 연구

지도교수 김 영 일

이 논문을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 년 4 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이 은 영

이은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9 년 5 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3
4. 연구의 제한점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 5
1) 성폭력의 정의 ····· 5
2) 성폭력의 유형 ····· 8
2. 성폭력의 현황과 발생원인 ····· 13
1) 성폭력 현황 ····· 13
2) 성폭력 발생원인 ····· 15
3. 지적장애인의 성적 발달과 특성 ····· 19
1) 지적장애인의 성적발달 ····· 19
2) 지적장애인의 성적특성 ····· 22
4.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현황과 발생원인 ····· 24
1)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현황 ····· 24
2)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발생원인 ····· 26

Ⅲ. 연구 방법 ····· 29
1. 연구대상 ····· 29
2. 연구도구 ····· 29

3. 연구절차 ····· 30
4. 자료처리 ····· 30

Ⅳ. 연구결과 ····· 32
1.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력 실태 분석 ····· 32
1) 신고접수 현황 ····· 32
2) 피해 학생 현황 ····· 34
3) 가해자 현황 ····· 41
4) 성폭력 피해 현황 ····· 46
5) 수사 및 재판 실태 현황 ····· 53
2.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관련변인 분석 ····· 57
1) 피해자 연령과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 57
2) 피해자 장애등록 여부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 58
3) 피해자 거주 지역과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 58
4) 피해 장소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 59
5) 피해자의 가족형태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 60
6) 피해자 가해자와의 관계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 60

Ⅴ. 논의 ····· 62
1.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실태 ····· 62
2.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관련변인 ····· 63

Ⅵ. 결론 및 제언 ····· 65
1. 결론 ····· 65
2. 제언 ····· 66

참 고 문 헌 ····· 68

표 목 차

<표 Ⅱ-1> 연간 성폭력 범죄 현황 ····· 14
<표 Ⅱ-2>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 15
<표 Ⅳ-1> 접수자 현황 ····· 32
<표 Ⅳ-2> 성폭력 접수 방법 현황 ····· 33
<표 Ⅳ-3> 성폭력 접수 경로 현황 ····· 34
<표 Ⅳ-4> 성폭력 피해자 연령 현황 ····· 35
<표 Ⅳ-5> 장애등록 여부 ····· 35
<표 Ⅳ-6> 피해자 거주지역 ····· 36
<표 Ⅳ-7> 성폭력 피해자 가족형태 ····· 36
<표 Ⅳ-8> 의료보험 ····· 37
<표 Ⅳ-9> 주거형태 ····· 38
<표 Ⅳ-10> 피해자 가족의 월수입 ····· 38
<표 Ⅳ-11> 부모 직업 ····· 39
<표 Ⅳ-12> 부모 학력 ····· 40
<표 Ⅳ-13> 가해자 수 ····· 41
<표 Ⅳ-14> 가해자 연령 ····· 42
<표 Ⅳ-15> 피해자와의 관계 ····· 43
<표 Ⅳ-16> 가해자 직업 ····· 44
<표 Ⅳ-17> 가해자 장애 유무 현황 ····· 44
<표 Ⅳ-18> 가해자 음주・약물 사용 여부 ····· 45
<표 Ⅳ-19> 성폭력 유형 ····· 46
<표 Ⅳ-20> 가해행위 유형 ····· 47
<표 Ⅳ-21> 피해 장소 ····· 48
<표 Ⅳ-22> 폭행 및 협박 동반 ····· 48

<표 IV-23> 피해자 음주 및 약물사용 강요 여부 ····· 49
<표 IV-24> 가해자의 유인책 동반 ····· 49
<표 IV-25> 피해 횟수 ····· 50
<표 IV-26> 피해지속 기간 ····· 50
<표 IV-27> 피해 후 인지기간 ····· 51
<표 IV-28> 최초 인지자 ····· 52
<표 IV-29> 인지경위 ····· 52
<표 IV-30> 고소 현황 ····· 53
<표 IV-31> 수사 현황 ····· 54
<표 IV-32> 기소 여부 ····· 54
<표 IV-33> 기소 내용 ····· 55
<표 IV-34> 불기소 내용 ····· 55
<표 IV-35> 기타 내용 ····· 56
<표 IV-36> 재판 결과 ····· 56
<표 IV-37> 피해자 연령과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 57
<표 IV-38> 장애등록 여부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 58
<표 IV-39> 거주 지역과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 58
<표 IV-40> 피해 장소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 59
<표 IV-41> 가족형태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 60
<표 IV-42> 피해자 가해자와의 관계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 60

Abstract

The Current State and Related Variables of Sexual Violence among Female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Honam Region

Lee, Eun Young
Advisor: Prof. Kim, Young-il
Major: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related variables of sexual violence among female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Honam Region. With consent from the director of H center for preventing and intervening sexual violence, this study obtained and collected data on the case reports of sexual violence for three years from 2005 to 2007. The subjects were selected only for female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under age 19, yielding 56 cases which represented 12.6 per cent of the total 444 cases of sexual violence. The cases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to describe the present state of sexual violence and to explore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type of sexual violence.

The majority of cases were referred by agency personnel, not parents, through telephone to H center. About half of the cases were children under age 13; most of the students were from the families in low socioeconomic status.

The sexual violence occurred at a variety of places, including the victim's home as well as harmer's. Fifteen cases were accused to the court; ten were imprisoned.

Age and residence, respectivel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ype of sexual violence. Female students under age 13 were more likely to be indecently assaulted than those ages 13 to 18, while the latter were more likely to be raped than those under age 13. Female students registered as intellectually disabled were more likely to be indecently assaulted than those not registered as such, while the latter were more likely to be raped than the former.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성(sexuality)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고 인간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신체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성적 행동은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규범과 태도에 의해 지배되며, 또한 개인의 장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Monat-Haller, 1992).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의 영향으로 성에 있어서는 은폐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왔으나 오늘날 성에 관련된 문제가 급증하면서 사회는 더 이상 성 문제를 은폐하거나 기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성에 관한 자료와 정보는 상당히 발전되어 전문적인 지식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성 문화가 과거에 비해 좀 더 개방적이고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된 반면, 성폭력에 대한 피해 사례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날로 그 심각성은 더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외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 미국의 Marilyn M stromsness(1980)은 지적장애인이 성폭력에 당할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일반인의 4배나 더 많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추정했고, 여성지적장애인의 79%, 남성지적장애인의 54%가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0). 또한 여성부(2004) 상담통계 분석에서도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59.7%로 비장애인 30.3%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장애가 53.2%로 가장 많은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현혜, 2003).

한편 성폭력의 횟수(지속성)도 매우 높은데, Valenti-Hein과 Schwartz(1995; Reynolds, 2000)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90%이상이 성폭력을 경험하며, 그 중 49%가 10번 혹은 그 이상의 사건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주요 집단이 가족,

직원 또는 자원 봉사자, 가족과 친구이거나 이웃, 상인 등 지역사회내에서 알고 지냈던 성인들, 현재 또는 과거에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으로 나타났다(McCarthy, 1999).

이상의 상담통계와 연구들을 통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고 지속적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대다수가 아는 사람이며, 지적장애인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과 서비스, 지역내 제한된 인간관계 등에 따라 가해자의 주요 집단이 비장애인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1980년대 시설 비리의 일부로서 빈번하게 제기되었으나 장애인 생활시설내 비리문제의 부분으로서 인식되었을 뿐, 성적 관점에서 지적장애인에게 가해진 성폭력으로 다루어지지 못했다(조옥, 2000b).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장애여성운동조직이 발생하여 장애인 내부에서 성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강릉에서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7년간의 집단성폭력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에 따라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한겨레, 2000). 2001년에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성폭력상담소들이 개소되었고 이러한 상담소들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여성을 포함한 장애여성들의 성폭력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아직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많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실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할 수 없거나 신고가 용이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 또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별다른 대응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한층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몇몇 사건 등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으로 친정 부모의 묵인하에 17세 때 농장에 오게 되어 10여 년 동안 지속된 성폭력 사건이다(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2003).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5년 성폭력 상담통계 건수들 중 53%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여성부 산하기관인 H 아동센터에 접수된 19세 미만의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알아보고 피해자의 연령, 장애등록여부, 거주 지역, 피해 장소, 가족형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6개 항목을 교차 분석하여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를 초래하는 관련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는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실태와 관련 변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정도와 관련된 변인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① 호남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② 지적장애 여학생

이 연구에서 지적장애 여학생이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신지체 또는 지적장애로 등록한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롯 공식적인 장애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여성부 산하기관인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H 아동센터) 소속 임상심리사의 평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다.

③ 성폭력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추행 등을 포함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실태 및 관련 변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전북지역에서 H 아동센터에 성폭력 피해로 접수한 사례는 오직 1건이었다. 그러나 H 아동센터가 광주·전남 및 전북지역 성폭력 상담을 담당하도록 설치된 기관이므로, 비록 전북지역의 사례가 1건이지만 이를 자료 분석에 포함시켰다.

둘째, 이 연구에서 지적장애 여학생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학생뿐만 아니라 등록하지 않았지만 H 아동센터 임상심리사에 의해 지적장애가 있을 것으로 선별된 학생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지적장애 여학생은 아직 공식적인 진단을 통해 지적장애로 확정되지 않은 지적장애 가능성이 높은 여학생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일부 지적장애 여학생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을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연구 대상의 대다수는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지만 소수의 대상자는 재학여부가 파악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19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을 우선 적용하므로서 이 연구에 대상을 지적장애 여학생으로 정의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성(sexuality)과 폭력(violence)에 대한 경험 인식에 따라, 그 밖에도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폭력이고 어떠한 행위들이 친근감이나 애정의 표현이 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에 대해 명확히 규정을 내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이 성폭력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도 차이가 있다(채연아, 2003). 또한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언어 포함)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 위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부부강간, 성기노출, 음란통신, 음란물 보이기, 윤락행위 강요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박현지, 2001).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행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행위이며 일방적인 인권침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하에 발생되는 범죄행위로서, 역사적으로 개인적· 심리학적인 접근, 폭력 하위 문화적 접근, 여성학적 접근 등 여러 가지 입장으로 다루어져 왔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그 동안 성폭력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시각에서 성폭력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왔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의 정의에 대해서는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여성학적, 법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성폭력의 유형이나 범위, 규정에 차이가 있다(최영애, 2000b).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구자의 다양한 성폭력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적 · 심리학적 관점

개인적 · 심리학적인 접근은 1960년대까지 주도적으로 나타난 접근방법으로 성폭력을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며, 가해자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범죄시하는 등 성폭력을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본다(김인숙, 2000). 즉 심리적으로나 정신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성들에 의해 저질러지며, 이런 남성들은 건강한 일반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성폭력의 원인이나 해결방안도 대부분 가해자의 성격특성이나 성장과정에 보여지는 부적응적 요소, 성심리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신고가 된 성폭력 이외의 숨겨진 여러 가지 성폭력의 경우는 가해자의 성격 특성이나 문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무엇보다 가해자가 처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의 영향을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박옥임 외, 2004).

(2) 사회 문화적 관점

1960년대부터 Amir(1971)에 의해서 사회학적인 접근방법이 시도되었는데 그는 가해자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그들에게서 정상인과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새로운 사실로서 가해자 대부분이 흑인이며 빈곤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성폭력이 개인적·심리학적인 문제보다 폭력 하위문화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즉 폭력 하위 문화적 접근은 가해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환경요소들이 내재화된 결과 성폭력을 낳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다(박용숙, 2002).

또한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컴퓨터를 통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연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성폭력의 개념으로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컴퓨터 통신에 음란물을 판매하

는 행위, 대화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하는 행위, 음란물 제작 시 청소년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성폭력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재엽· 이서원, 1998).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거나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은 통신공간에서의 여성의 접근 기회를 차단하고 활동 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보겠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3) 여성학적 관점

1970년대부터 여성학적인 접근이 전개되었는데 그간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이 적극적으로 드러남과 동시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여성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의 정의는 폭 넓은 개념으로써 전통적인 법적 의미의 성폭력인 강간, 강제추행, 성적희롱 등의 성(sex)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 유형의 강제력의 행사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과 더불어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까지도 간접적인 성폭력으로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박용숙, 2002).

또한 여성학적인 의미의 성폭력 개념은 언어 희롱이나 성기노출, 가벼운 성적 접촉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성을 매개로 상대 여성에게 신체적, 정신적 불쾌감이나 불안감, 공포를 주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박옥임 외, 2004).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즉,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통신, 윤간, 아내구타, 임신매매, 강제 매춘, 포르노 제작 및 판매, 어린이 강간, 부부강간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들이 포함된다. 심지어는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것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된다(김원홍 외, 2000).

(4) 법적 관점

1994년에 제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채연아, 2003).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은 피해자의 인식을 전제로 한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성역할의 수용정도에 따라 성폭력으로 인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피해 당시에는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를 성폭력으로 인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배적인 성규범의 수용정도에 따라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등 성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성희롱, 성기노출은 물론 어린이 추행, 음란전화 등 성적으로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하며, 음담패설이나 강제로 껴안는 것, 키스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이것으로 인해 받는 행동제약도 넓은 의미의 성폭력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0).

2)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유형을 크게 행위별 유형인 강간, 성추행, 강간 미수와 내용별 유형인 아동, 청소년, 친족 성폭력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행위별 유형에 따른 분류

① 강간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 때문에 저항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간음은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직접 삽입하는 성교행위를 말한다.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된 것 이외에도 구강 성교, 항문 성교, 그리고 질 또는 항문의 손가락 삽입이나 이물질 삽입(병, 야채 등)을 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삽입시간, 사정 여부 등에 상관없이 성립된다. 그리고 강간죄의 대상은 반드시 여자에 한하므로, 예컨대 가해자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을 강간했을 경우나 여성이 남성을 강간했을 경우, 이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뿐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강간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중한 범죄다. 강간죄는 형법 제 297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엄한 형벌로 처벌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②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 애무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강제로가 의미하는 바는 남성이 극단적인 강압으로 한 경우 외에도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행동을 분명히 했음에도 아랑곳없이 성폭력을 행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즉, 남성이 고의로 여성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채연아, 2003). 강제추행죄는 간음행위에 이르지 않는 성적 침해 행위이며 그 대상은 여자와 남자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벼운 육체적 접촉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포함되지 않지만, 복수, 호기심 등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라면 중한 성적 침해행위이며 강제추강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 298조에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③ 강간 미수

남성이 여성의 뜻을 무시하거나 혹은 강제로 성교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행위를 말한다. 즉, 가해자가 강간을 의도하였으나 주변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기 삽입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

았다 하더라도 이를 하기 위한 전(前) 동작, 이를테면 가해자가 옷을 스스로 벗었다든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든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강간 미수로 볼 수 있다(박옥임 외, 2004).

(2) 내용별 유형에 따른 분류

① 아동 성폭력

누구를 아동 성폭력의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는 문제에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다. 먼저, 아동의 발달연령을 기준으로 몇 세 이하의 아동을 아동 성폭력의 피해대상으로 하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의 경우,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경우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적용되고 있다.

형사상 미성년자인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추행이나 강간 미수 또는 강간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어린이가 성인에 의해 성적인 방식으로 이용당할 때에 발생하며, 그 유형으로는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해 애무하거나 성기의 자극, 성교 그리고 구강 또는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는 것, 성기노출, 음란비디오 보여주기, 나체 강요, 가해자의 만족을 위한 자위행위 강요,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피해 어린이의 연령을 보면, 대체로 6세부터 13세의 어린이가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YMCA, 2000).

가해자들이 아동을 유인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힘이나 사회적 권력 관계를 이용하기보다 오히려 평범한 질문이나 사소한 물건을 주는 선심 공세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속임수나 금품으로 유인하기, 건물이나 길을 가르쳐 달라는 식의 질문으로 유인하기, 장난이나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면서 유인하기, 특별히 귀여워한다며 애정으로 가장하기, 그리고 직접적으로 신체적· 심리적인 위협과 협박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적장애인들이 가해자로부터 이렇게 사소한 유인방법에도 쉽게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동이 이들을 평소에 잘 알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서울 YMCA, 2000).

한국성폭력상담소 최근 3년간의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아동 성폭력 상담건수가

2000년 439년으로 전체(15%), 2001년 632건 전체(22%), 2002년 672건 전체(23%)로 아동 성폭력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2006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성폭력상담건수 2,317건 중 성폭력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는 성인피해자가 1,476건(63.7%), 청소년 358건(15.5%), 아동 295건(12.7%), 유아 154(6.6%), 미상 34건(1.5%)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청소년 피해자는 1.7% 감소하고 아동 피해자의 비율은 2.9%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 1,935건(83.5%), 모르는 사람 306건(13.2%), 미상 76건(3.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한혜경, 2007).

그리고 아동의 성폭력이 다른 종류의 성폭행보다 신고율이 높고 신고도 사건 즉시 행해지는 편이다. 그러나 피해 아동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기 힘들고, 마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여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 아동의 성폭력 사실 자체가 은폐되기 쉽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서울 YMCA, 2000).

② 청소년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은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는 청소년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에는 아동의 성폭력 피해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윤간, 강도 강간 등 특수 강간의 비율이 높고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 있다. 이는 불량배, 학교 폭력배 등이 집단 폭행, 강도, 흉기 사용, 침입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행하는 데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친족내의 피해, 선배나 동급생에 의한 피해, 교사나 강사 등에 의한 성폭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아동 성폭력은 폭력사용 여부, 저항 여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행위로 취급되어 엄하게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 성폭력은 때때로 동의된 성관계로 오인 받기도 한다. 이는 요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꽤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판단 능력과 방어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최근 성폭력의 상당 부분을 청소년에 의해 성폭력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은 청소년의 성폭력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성에 대한 금기가 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에서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은폐율이 높아 실제 피해 정도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채연아, 2003).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8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성범죄에 의한 청소년 피해가 2005년 3789명, 2006년 5159며, 2007년 5460명에 이어 2008년 상반기에만 무려 2790명으로 3년 새 30.6%나 증가하는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작년의 경우, 전체 성범죄 피해자 1만 5232명 중 청소년 피해자가 무려 35%에 이르는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성적인 피해, 즉 성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강간 중에서 한가지의 피해라도 당한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의 비율은 37.8%로 10명당 약 4명꼴로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이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된 청소년의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양면에서 모두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청소년 성폭력은 피해 청소년의 원만한 가정생활과 건전한 사회생활을 파괴하는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하며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③ 친족 성폭력

친족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이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에 의해 1998년부터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김영서, 2001). 친족 성폭력은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제적인 성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의 직계가족이라고 생각되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대리 부모나, 양부모, 동거하는 부모의 친구(아버지의 여자친구, 혹은 어머니의 남자친구) 등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들도 포함하며 손위의 형제, 자매들도 이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가족내 성폭력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고 가족내 성폭력을 아동 성폭력의 전

형적 유형의 하나로 지적해왔다(Tower, 1996).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04년 상담사례 2,362건 가운데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136건(5.75%), 2005년에는 219건, 2006년에는 313건으로 증가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친족 및 친/인척이 2317건 중 360건으로 15.5%를 차지하였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되어 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친족 성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 또는 연령이나 가족내 지위가 주는 권위 등을 이용하며 보통 어린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피해자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후유증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박용숙, 2002).

친족내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의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해자의 '손상된 신뢰감의 재확립'이며 학대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감정을 충분히 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감, 가해자에 대한 감정, 다른 한편의 부모나 기타 가족들에 대한 감정들과 자신이 학대받고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가족들에게 분노하고 원망하지만 앞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안동현, 1994).

2. 성폭력의 현황과 발생원인

1) 성폭력 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0년 상담건수는 2,873건으로 그 중 80.37%인 2,309건이 성폭력 피해상담이었다(박옥임 외, 2004). 성폭력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성추행이 39.6%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강간 32.4% 성희롱이 13.0%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5). 성폭력 피해상담의 고소율은 9.96%로 1999년의 12.71%보다 낮은 수치였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 고소율이 낮아서 범죄피해의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주 피해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밝히게 될 경우 입게 될 사회적 압박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성적피해를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나 성폭력상담소 등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와 심각도, 경향을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다(최유진, 2006).

(1) 연간 성폭력 범죄 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관련 범죄는 강간과 「성폭력특별법」위반을 합산하여 1999년 총 8,565건이 발생하여 1998년에 비해 9.2% 증가했다. 또한 2000년부터「청소년성보호법」위반행위를 포함한 수치를 살펴보면 2000년 11,069건에서 2001년 13,204건으로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11,587건에서 14,089건으로 21.6% 증가하다가 2005년에는 다시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성폭력 관련범죄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Ⅱ-1> 연간 성폭력 범죄 현황

구분/연도	강간	성폭력 특별위반	청소년의 성 보호법	계
1996	5,580	1,446	-	7,026
1997	5,627	1,440	-	7,067
1998	5,978	1,868	-	7,846
1999	6,359	2,206	-	8,565
2000	6,856	3,607	606	11,069
2001	6,750	3,893	2,561	13,204
2002	6,116	3,334	2,137	11,587
2003	6,519	3,913	2,079	12,511
2004	6,959	4,264	2,866	14,089
2005	7,321	4,282	1,843	13,446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2006. p. 186).

(2) 성별 · 연령별 피해자 현황

2005년도 성폭력상담소의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피해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2,062건(95.9%), 남성이 86건(4%), 남・여 3건(0.1%)으로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성인피해자 1,421(66%), 청소년 370건(17.2%), 어린이 211건(9.8%), 유아 115건(5.4%), 미상 33건(1.5%)으로 나타났고 20세 이하의 미성년피해자 분포가 32.5%를 차지했다(최유진, 2006).

<표 Ⅱ-2> 성별· 연령별 피해자 현황

성별	여	남	남・여	총계
성인 (20세 이상)	1,368(63.6)	52(2.4)	1	1,421(66)
청소년 (14세-19세)	349(16.2)	21(1)	0	370(17.2)
어린이 (8세- 13세)	202(9.4)	8(0.4)	1	211(9.8)
유아 (7세 이하)	111(5.2)	4(0.2)	1	116(5.4)
미상	32(1.5)	1	0	33(1.5)
총계	2,062(95.9)	86(4)	3(0.1)	2,151(100)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2005년 상담통계 (2006).

2) 성폭력 발생원인

1960년대에는 성폭력의 발생 원인을 가해자의 인성에 초점을 맞춰 성폭력이 가해자의 일탈 혹은 병적인 성 때문에 유발된다고 보았고, 1970년대 초부터는 성폭력을 행위자 개인보다는 그 행위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요인들에 초점을 두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았다(채연아, 2003).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성폭력은 남성의 본능적인 성충동에 의한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 2000).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는 문제이다. 즉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남성이 여성을 강간할 때 이는 단순히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고수하기 위한 것이다(이은숙, 2004).

성폭력의 발생의 원인은 남녀 불평등한 성 차별적인 사회구조, 왜곡된 성 문화, 체계적이지 못한 성교육, 수사절차상의 문제, 성에 대한 의식 부족과 낮은 신고율로 인해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녀 불평등한 성 차별적인 사회구조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로서 성(sexuality)에 대해서도 남녀에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왔다. 즉 남성에게는 성이 적극적, 허용적이지만 여성에게는 소극적이고 억제해야 할 부분으로서, 성의 이중 기준이 지속되어온 것이다(신혜수, 1994). 이와 같은 전통주의적 시각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관념으로서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범죄시하며, 성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불상사로 치부하게 한다. 따라서 전통주의자들의 주장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합리화하고 남성우월성, 여성 통제권 등을 고수해 나가고자 하는 남성 중심적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하숙자, 1998).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직계가족형태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에게 종속되는 지위, 남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위치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 여성은 무력하고, 남성의 보호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남성의 외도와 성적 자유를 허용하면서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남성의 성폭력은 특별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여성의 순결상실은 문제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박옥임 외, 2004). 그래서

남성의 성적욕구는 본능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남성의 성적행위에 대해서 관대하고 여성에게는 절대적 순결을 강요하는 이중적 성규범과 성관계를 상호간의 합의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국한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성관계로 간주하는 성기 중심적 성의식이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최영애, 2000a).

(2) 왜곡된 성문화

성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남성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당연시되는 성문화가 존재한다. 모든 면에서 남성은 능동적, 적극적인 존재로 구체적인 역할과 그에 따른 인격적 특성을 갖는 반면, 여성은 수동적, 소극적,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짓는 인격적 특성이 성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남성은 성 본능이 강하고 반대로 여성은 성에 대해 관심이 없는 존재로 보는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박옥임 외 2004).

성 산업은 성적 쾌락주의를 부추기며, 남성적 성을 확대,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성문화를 조장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성 상품화가 확산되고 서구의 성 개방 문화가 음란·퇴폐 내용의 비디오나 성인 오락지, 도색잡지, 청소년용 음란 저속만화를 통해 들어오고 스포츠 신문들의 가학성, 폭력성이 공공연히 노출되는 현실이 각종 성폭력과 성범죄를 조장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최영애, 2000b).

(3) 체계적이지 못한 성교육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제대로 된 성 지식을 습득할 통로가 없다. 성교육을 각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했고, 일회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지식 전달로 진행된다. 성교육이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므로 인해 성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박용숙, 2002).

(4) 수사과정에서의 문제

현재 성폭력 처리과정은 강력범죄에 준하여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수사절차상 최초 단계라 할 수 있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수사방법을 훈련 받지 않는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고, 조사시간을 배려해 주지 않는 것과 장시간의 반복질문, 유도성 질문, 피해자에 대한 유책성 질문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제2, 제3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수사담당자들의 잘못된 통념이다. 수사담당자은 성폭력 범죄사건 수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담당자들의 잘못된 통념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욱박지르거나 범죄시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적 고통과 인격적인 침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박종선, 2002).

(5) 성에 대한 의식 부족과 낮은 신고율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윤리관인 순결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보다 우리나라 대대로 내려오는 정절(순결) 이데올로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충격을 받는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피해 당사자는 수치심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며, 대다수의 피해 여성들이 남성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켰거나 적어도 부주의해서 당했을 것이라는 사회적 비난과 흠이 생긴 여자라는 순결 상실감과 이에 대한 멸시가 가져오는 두려움에 신고를 꺼리게 한다(최영애, 2000b). 이러한 이유로 공식화된 성폭력 사건의 수치보다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은폐되고 있는 성폭력의 사건수치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3. 지적장애인의 성적 발달과 특성

1) 지적장애인의 성적발달

지적장애인의 성적발달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성적발달은 개인적인 환경과 특성, 교육적인 환경, 사회적 기대, 태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지적장애인의 개개인의 성적흥미와 표현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Johnson과 Kempton(1981)은 지적장애인의 성적인 발달은 비장애인들처럼 높은 수준에서부터 낮은 수준의 성적인 관심과 욕구, 생식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Gordon(1971)은 성에 대한 심리적 반응 즉, 성적 충동과 욕구는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발달을 하고 판단력은 낮지만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경험한다고 한다(정진옥, 1996).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신체-성적인 발달과 심리-성적인 발달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체- 성적 발달

지적장애 학생의 일반적인 발달은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지체되지만 성적인 발달에서는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지적장애 학생도 비장애 학생들과 같은 신체발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능력의 지체와 함께 사회생활 능력이 열악하므로 성적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고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자신의 신체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송소현, 2007).

지적장애인의 몽정, 변성시기, 초경, 젖몽우리 시기는 일반 아동보다 비교적 늦어지고 더 느리게 발달하며 고르지 않는 성적발달 과정을 거치지만 성적인 면에서의 성장은 정상적이고 건강하며 활기 있는 과정을 보이며, 사춘기가 되면 지적장애인의 신체적 발달은 예기치 못할 정도로 급속히 일어난다. 유방과 둔부와 같은 외형상의 뚜렷한 변화는 물론 자주 배가 고프고, 괴로워하고, 어색한 행동을 할 때가 많다. 또한 이러한 두드러진 외적 변화에 못지않게 생식기관의 내적 변화도 수반되

며 월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갑작스런 신체적 변화는 이들에게 불안, 공포, 초조와 같은 정서적 변화도 초래하게 된다(신현달, 1996).

미국 성 정보 교육자문기구 (Sex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S.A. 1970)에 따르면 청·장년기 지적장애인의 사회적인 성적욕구는 주위의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정신적 욕구는 정상인들과 거의 같으며 정신능력과 관계없이 성적인 감각과 충동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김진희, 2000).

또한 Heshusius(1982) 와 Liberatore(1993)는 지적장애인은 정상적인 성충동과 이차 성징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적 욕구를 가졌다는 것을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이애란, 2000).

Morgenstern(1973)은 지적장애인들이 성역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약간 지체될지라도 나이가 들어 갈수록 지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으며, 성인기에 도달한 경도 지적장애인들은 자기표현을 할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하지만 상상력이 결핍되고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또래보다 자신의 한계를 부정하는데 더 혐오적인 반면 성적활동에는 더 탐닉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강정혜, 2001).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성적 발달이 지체되며 정신지체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더 늦어지는 경향은 있으나 나름의 성적인 발달은 이루어진다(전용호, 1995). 윤경일(1985)의 연구에서도 여자의 경우 음모, 유두, 초경은 일반 여자에 비해 오히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 여드름, 어른 모양의 수염은 일반 남자와 그 시기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적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발달을 하고 있으며,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지적장애 학생들의 성적 욕구는 주위의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다(이애란, 2000).

이상의 연구들에서 보여주듯이 지적장애인들의 신체-성적 발달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들이 있지만 지적장애인들의 신체-성적 발달이 정상적인 발달순서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일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이 사춘기 이후 성을 둘러싼 갖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를 다각도로 이해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충분

한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차 성징 이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서적 격변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2) 심리-성적발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화되고 성적 지식, 태도 및 경험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한 과도한 보호와 제한적인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적절한 성적 지식, 태도 및 경험을 학습할 대상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해 성적인 면에 있어서 사회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은 이차 성징으로 인한 신체 변화에 심리적으로 당황해 하며 정상적인 성적 특성이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감독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임선명, 2003).

사춘기 동안에 많은 지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처럼 자신들의 정체감이 강화되고 자신들의 성역할을 추구하며, 상당한 자립을 성취하기도 하고, 정상 또래가 겪는 정체성의 심각한 혼란도 겪는다(정진옥, 1997).

초등부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담당 19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신현달(1996)의 연구에서 지적장애 여학생의 생리적 변화시 심리적 상태를 조사한 결과 '불안, 초조하다(64%), 아무런 느낌이 없다(22%), 남을 못살게 군다(7.33%), 기분이 좋다(4.00%), 무섭고 슬프다(2.67%)'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적장애인도 비지적장애인과 같이 이차 성징의 발달로 인해 심리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즉, 지적장애인의 관능적인 욕구와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임신과 그로 인한 폐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였다. 어떠한 권위로도 지적장애인의 성적인 욕구를 제한할 수 없다면 결국 유일한 해결 방안이란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책임과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성적인 문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뿐이었다. 그러므로 지적장애인도 상대방 이성에 대하

여 친밀감과 성적인 욕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성적인 욕구는 삶의 일부이자 필수적인 요소로서 더욱 활발히 표출될 것이다(Heshusius, 1987).

2) 지적장애인의 성적특성

지적장애인의 성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A.A.M.D(The American Of mental Defficiency)에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노희정, 2000).

(1) 경도 지적장애인(mild mentally retarded)의 성적 특성

경도 지적장애인의 성적 특성으로는 첫째, 사회생활에 있어서 보통수준 또는 정상적인 심리 사회적 성적행동과 유사하다. 둘째, 대부분의 사회인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적응하고 성적충동이나 자극을 조절한다. 셋째, 성교육, 성상담, 성치료에 대한 언어적 방법에 반응할 수 있다.

경도 지적장애인과 성의 관계에서 경도 지적장애인의 성은 비지적장애인의 성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경도 지적장애인은 성적 욕구를 인식하고 충족하는 데 다양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지만 장기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회 심리적 성적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고 쉽게 성적 관계를 가진다. 경도 지적장애인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성적 충동과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성적으로 남용되거나 착취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도 지적장애인은 성적인 면에서 이성적이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쉬우므로 이들에게 적응 능력을 보다 발전시켜 풍부한 성적 생활을 이끌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2) 중등도 지적장애인(moderately mentally retarded)의 성적 특성

중등도 지적장애인의 성적 특성은 첫째, 이차 성적 특징이 지연될 수 있다. 둘째, 심리 사회적 성적 행동들을 개인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셋째, 자위행위, 비식별적인 동성이나 이성간의 성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중등도 지적장애인의 성의 관계에서 중등도 지적장애인의 성은 성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다. 중등도 지적장애인은 쉽게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낮은 적응능력, 인지능력, 교육적 능력으로 인하여 쉽게 지적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등도 지적장애인의 특성들이 성적으로 비지적장애인과 다르지 않다. 중등도 지적장애인의 성적 행동, 자기자극과 무분별한 자위행위, 동성 혹은 이성과의 행동을 부모, 전문가들이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부모나 기타 전문가들은 경도 지적장애인에게 성적으로 책임감을 가지도록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경도 지적장애인의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허용적일 수 있다. 그러나 중등도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성적으로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등도 지적장애인은 성적인 책임감을 배울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에 따라 그 수준이 다양하다고 본다.

(3) 중도 지적장애인(severely mentally retarded) 성적 특성

중도 지적장애인의 성적 특성은 첫째, 성적충동에 대한 조절이 매우 어렵다. 둘째, 적응 및 심리 사회 성적행동의 적절한 발달이 부족하다. 셋째, 관능적 성적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예견할 능력이 제한적이다.

중도 지적장애인의 성의 관계에서 중도 지적장애인인은 다양한 중복장애를 수반할 수 있다. 가능한 한 중도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과 일반적인 복지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치료 프로그램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욕구충족을 생각 할 때 자연히 성욕에 대한 욕구충족은 맨 마지막 순위가 된다. 중도 지적장애인과 최중도 지적장애인에게는 과도한 자기자극 활동이 자주 나타난다. 전문가는 자기자극이 외음부에 직접적인가, 혹은 그렇지 않는가를 평가하여 만일 그것이 그 개인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면 이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

(4) 최중도 지적장애인(profoundly mentally retarded)성적 특성

최중도 지적장애인의 성적 특성은 첫째, 기본적 욕구 충족에 따라서 기능한다. 둘째 성적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예견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셋째 주로 자기 자극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다. 넷째 종종 지나치게 해로운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다.

최중도 지적장애인의 성의 관계에서 최중도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성욕을 하나의 욕구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왜냐하면 최중도 지적장애인은 적절한 의사소통체계, 또는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중도 지적장애인은 여러 종류의 자극을 자주 보이며, 종종 자위행위가 나타나고 어떤 경우는 해로운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손톱은 짧게 잘라주고 적당한 로션과 약을 사용하여 성기를 보호하도록 하며, 자위행위를 할 때 부적절한 사물을 이용하지 않게 한다. 특히, 지적장애 여성인의 경우 생리시에 성기를 만져 상처를 내고 생리대를 더럽히거나 생리패드를 입에 대는 등 매우 곤란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결핍된 최중도 지적장애인은 가정이나 기숙시설에서 양육 보호하는 사람들에 의해 성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최중도 지적장애인은 자신이 성적으로 이용당하더라도 이 경험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4.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현황과 발생원인

1)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현황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현황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자들에 의하면 지적장애인를 가진 사람은 비장애인보다 성폭력적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Lumley & Miltenbergen, 1997).

Baladerian(1991)는 일반 아동에 비해 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할 확률이 4~10배에 달한다고 하며, 여자 지적장애인의 39~68%, 남자 지적장애인의 16~30%가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Mccarthy & Thompson (1997)의 보고에서도 61%의 지적장애 여성과 25%의 지적장애인의 남성이 성적학대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효경, 2001에서 재인용). 또한 Stromsness(1993)는 지적장애여성 27명을 면담한 결과 그 중 80%가 성폭력 경험이 있었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 중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폭력이 71%, 비신체적 접촉인 음란물 보이기, 누드사진 찍기, 나체보기 등이 29%이었다. Watson과 그의 동료들(1992)연구에 의하면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지적장애인 중 여성의 83% 남성의 32%가 18세 이전의 미성년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장기간에 거쳐 지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성폭력 가해자의 95%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해자는 주로 친지, 친구, 친구의 아버지, 보육사, 버스기사, 아버지, 양아버지, 입양 아버지, 오빠, 삼촌, 할아버지 등으로 보고 되어왔다(Ryerson, 1984).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를 다룬 연구는 아직 없으나 여성 지적장애의 성폭력 상담사례를 분석한 연구(하숙자, 1998; 이예자, 1999; 조옥, 2000a)와 성남거주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조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02) 자료를 통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 실태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예자(2000)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40건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례 중에서 지적장애아의 성폭력 비율이 25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장애아보다 더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2002년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를 보면, 전체 267건 중에서 31.1%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 대상 89건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31%), 지적장애(26.4%), 지체장애(22.9%), 청각장애(11.7%)순으로 지적장애 여성이 두 번째로 성폭력을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유형을 보면, 성희롱(46.1%), 성추행 (37.1%), 강간(12.4%), 부부강간(10.3%)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

소, 2002). 이는 낮은 지적능력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져 지적장애인 스스로가 표현하기가 어렵고 폐쇄적 성문화에 의해 보호자들도 신고를 꺼리는 경향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발생원인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성폭력 피해자로 노출되기 쉽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지적장애인들은 인지 및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하기가 어려워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 쉽다(이해경, 2002).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2002)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은 성희롱(42.9%), 강간(35.7%), 성추행(21.4%)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강간을 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횟수도 78명 중 한번이 26명(33.3%)으로 가장 많고, 세 번과 지속적인 경우가 각각 12명(15.4%), 두 번이 11명(14.1%), 다섯 번 이하와 10번 이하가 3명(7.7%)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경우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02).

지적장애인의 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지적장애인의 제한성으로 인한 문제, 지적장애인이라는 신체적 조건을 이용, 지적장애인 스스로 피해사실 신고의 어려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입증과 관련한 법적문제,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부재로 인해 지적장애인의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의 제한성으로 인한 문제

지적장애인들은 성폭력에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하여 성폭력 피해를 많이 입게 된다고 하였다(Sobsey & Varnhagen, 1988). 또한 성폭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성적인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 정상적인 성적행동 발달의 의식부족으로 인해 성적 착취를 당한다는

의식이나 가해자의 숨은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성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나 반응이 적절하지 못함으로 인해 성적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된다. 더욱이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성을 쉽게 믿고, 사랑에 빠지고 싶어하는 행동은 가해자에게는 손쉽게 쟁탈할 수 있는 성폭력 대상자가 된다고 했다(장비, 2000). 지적장애인은 성적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유혹에 쉽게 매혹 당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보호를 위해 죄의식과 공갈 협박을 주입시킴으로 피해자가 입을 열지 못하는 침묵자로 만든다고 하였다(조옥, 2001a).

(2) 지적장애인이라는 신체적 조건을 이용

지적여성 장애인 성폭력 발생의 증가원인은 기본적으로 지적여성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의 인식으로 인한 것이다. 많은 가해자들의 경우 '너 같은 지적여성 장애인 쯤이야' 하며 수시로 성폭력의 가해자를 자청하며, 지적여성 장애인의 약점을 이용해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한 것이다(조국현, 2006). 또한 장애인을 어린애와 같이 보며,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도 된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은연중에 깔겨있으며 외모중시의 사회풍조는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의 사회분위기는 죄의식이 없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성범죄가 저질러진다며 또한 이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조옥, 2000a).

(3) 지적장애인 스스로 피해사실 신고의 어려움

지적장애 여성들은 보통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상담해 오지 않는 한 지적여성 장애인 스스로 상담을 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적장애인 경우 이외의 장애를 지닌 장애인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심이나 무력감에 의해 더욱 신고를 하지 못한다(조국현, 2006).

(4)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입증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과 관련해서 야기되는 문제는 지적장애 여성의 경우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이 입증하기란 어려운 것이고 표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피해 정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결국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가해자는 법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므로 인해 더욱 지적장애인들의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박용숙, 2002).

(5)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부재

지적 여성장애 들은 보통 많은 관심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쉽게 지적여성장애인을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들어 버린다. 결국 이런 현실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성폭력 피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입고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 상황을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조국현, 2006).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 장애 영역과 개인의 특성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이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개개인에 알맞은 수준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자기보호 능력을 훈련시켜주어야 한다(조옥, 2001).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여성부 산하기관인 H 아동센터에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로 신고된 19세미만의 지적장애 여학생이었다.

이 센터에 신고된 성폭력 건수는 2005년 82건, 2006년 202건, 2007년 160건으로서 3년 동안 총 444건이었다. 3년 동안 접수된 성폭력 사례 총 444건 중 피해자가 장애인인 성폭력 사례는 총 77건(17.3%)이었다. 이들 중 피해자의 장애유형이 청각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인인 사례 7건을 제외하면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례는 총 70건(91.0%)이었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례 70건 중 피해자의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지적장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례는 총 56건(80.0%)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실태와 관련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5~2007년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 여학생 5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는 2005년 이후 H 아동센터에서 성폭력 사례를 접수할 때 사용한 '접수상담 기록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접수상담 기록지는 크게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초기접수자에 대한 정보, 피해에 대한 정보, 가해자에 대한 정보, 가족에 대한 정보, 수사 및 재판 정보 등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1 참조). 각 영역별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직업, 장애유무, 주

양육자 등에 항목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둘째, 초기접수자에 대한 정보에는 성명, 피해자와 관계, 주소, 연락처 등에 항목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피해에 대한 정보에는 법적분류, 피해유형, 피해 장소, 유인책, 피해횟수, 피해 인지기간 등에 항목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넷째, 가해자에 대한 정보에는 성명, 성별, 피해자와의 관계, 직업, 피해아동과 동거 여부, 장애유형 등에 항목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다섯째, 가족에 대한 정보에는 의료보장, 가족체계, 주택, 월수입 등에 항목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여섯째, 수사 및 재판 정보에는 고소여부, 구속여부, 기소여부 등에 항목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3. 연구절차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H 아동센터의 소장에게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2005~2007년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력 피해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었다. 그 후 연구자는 2005~2007년 H 아동센터의 접수상담 기록지 원 자료를 확보하였고, 참고자료로 H 아동센터의 2005, 2006, 2007년 연도별 사업보고서도 검토하였다. 원 자료 및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기초로 연구문제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4. 자료처리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신고접수현황, 피해학

생 현황, 가해자 현황, 성폭력 피해 현황, 수사 및 재판 실태 등과 관련된 항목을 각각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장애등록 여부, 거주 지역, 피해 장소, 가족형태, 가해자의 관계 등이 각각 성폭력 정도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할 때 각 셀의 기대빈도가 5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처리하였다.

첫째, 성폭력 피해를 빈도 분석한 결과 강간 24명, 강제추행 23명, 추행 6명, 기타 1명, 미파악 2명이었는데 기타와 미파악 3명에 대한 자료는 교차분석에서 제외시켰고, 강제추행과 추행을 한 범주로 재분류하여 성폭력 피해 정도를 강간 24명 및 강제추행 29명으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피해자의 거주 지역을 빈도 분석한 결과 광주 23명, 전남, 29명, 전북 1명이었으므로 전북을 전남과 합쳐 30명으로 계산한 후 거주 지역을 광주와 전남·전북으로 재분류하였다.

셋째, 피해 장소와 관련하여 숙박업소 4명, 기타 2명, 시설 1명, 미파악 3명 등을 외진 곳 7명과 합쳐 외진 곳으로 재분류하였다.

넷째, 가족형태와 관련하여 시설거주 11명, 친인척보호 1명, 기타 1명, 미파악 4명등을 합쳐 '시설거주 등'으로 범주화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력 실태 분석

1) 신고접수 현황

(1) 접수자

2005-2007년 H 아동센터에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사례를 접수한 접수자의 현황을 제시하면 <표 Ⅳ-1> 과 같다.

<표 Ⅳ-1> 접수자 현황

접수자	사례수(명)	백분율(%)
신고의무기관종사자	35	62.5
경찰	6	10.7
어머니	6	10.7
친족 및 형제	5	8.9
센터인지	2	3.6
아버지	1	1.8
기타	1	1.8
합계	56	100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사례 접수자는 신고의무기관종사자가 35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 신고의무기관종사자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중등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신고의무기관종사자 다음으로는 경찰, 어머니 각각 6명(10.7%), 친족 및 형제 5명(8.9%) 등의 순위로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사례를 접수하였다. 센터가 인지하거나 아버지가 접수한 경우는 각각 2명(3.6%), 1명(1.8%)으로 매우 적었다.

(2) 접수방법

H 아동센터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사례 접수방법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2>와 같다.

<표 IV-2> 성폭력 접수 방법 현황

접수방법	사례수	백분율(%)
전화	50	89.2
센터인지	2	3.6
내방	2	3.6
기타	2	3.6
합계	56	100

<표 I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사례의 접수하는 방법으로 전화가 50명(89.2%)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전화 접수 없이 직접 센터에 내방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및 센터인지, 기타는 각각 2명(3.6%)으로서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사례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매우 적었다.

(3) 접수경로

H 아동센터에 접수한 지적장애 여학생의 접수경로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성폭력 접수 경로 현황

접수경로	사례수	백분율(%)
의뢰	32	57.1
자발	11	19.6
소개	9	16.1
센터인지	2	3.6
기타	2	3.6
합계	56	100

<표 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사례 접수경로를 보면 타기관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뢰된 경우가 32명(5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더불어 지적장애와 관련된 상담소, 학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연계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발적으로 센터에 접수한 경우는 11명(19.6%), 타기관의 소개를 받은 경우도 9명(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서 다른 사건을 접수하던 중 아동의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도 2명(3.6%)으로서 매우 적었다.

위 결과를 요약하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사례를 접수한 접수자 현황에서는 신고의무기관종사자가 35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 사례를 접수한 방법으로는 전화가 50명(89.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성폭력 사례 접수경로를 보면 타기관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뢰된 경우가 32명(5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 피해 학생 현황

(1) 피해자 연령

H 아동센터에 접수한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자 연령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4>와 같다.

<표 IV-4> 성폭력 피해자 연령 현황

연　　령	전체	백분율(%)
만 13세 미만	29	51.7
만 13세-19세 미만	27	48.3
합계	56	100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13세 미만의 지적장애 여학생이 29명(51.7%)이며, 만13세 이상~19세 미만에 해당되는 지적장애 여학생이 27명(48.3%)을 차지하였다.

(2) 피해자 장애등록 여부

H 아동센터에 접수한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자 장애등록 여부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장애등록 여부

구분	사례수	백분율(%)
등록 함	29	51.7
등록하지 않음	27	48.3
합계	56	100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자 56명 중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29명(51.7%)이며, 나머지 27명(48.3%)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H 아동센터에 내방 후 심리평가를 통해 지적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이다.

(3) 거주지역

H 아동센터에 접수한 지적장애 여학생의 거주지역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6>과 같다.

<표 IV-6> 피해자 거주지역

거주지역	사례수	백분율(%)
전남	31	55.4
광주	24	42.9
전북	1	1.7
합계	56	100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자 거주지역이 전남이 31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4명(42.9%), 전북 1명(1.7%)이었다. 전북의 이용자가 광주, 전남 이용자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장거리 이동의 어려움으로 보인다.

(4) 가족형태

H 아동센터에 접수한 지적장애 여학생의 가족형태를 제시하면 <표 IV-7>과 같다.

<표 IV-7> 성폭력 피해자 가족형태

가족형태	사례수	백분율(%)
양부모 가족	26	46.5
한부모 가족	12	21.5
시설거주	11	19.6
친인척보호	1	1.8
기타	1	1.8
미파악	5	8.8
합계	56	100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아동센터에 접수한 지적장애 여학생의 가족 형태를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 주 양육자인 양부모가족 형태에서 지적장애 여학생 수가 26명(46.5%)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 해체된 가족 형태의 지적장애 여학생 수도 12명(21.5%)이며,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11명(19.6%), 친인척보호와 기타 각각 1명(1.8%)으로 매우 적었다.

(5) 의료보험 유형

H 아동센터에 접수한 지적장애 여학생의 의료보험 유형을 제시하면 <표 IV-8>과 같다.

<표 IV-8> 의료보험

의료보장	사례수	백분율(%)
건강보험	8	14.3
의료 급여1종	25	44.6
의료 급여2종	18	32.2
미파악	5	8.9
합계	56	100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의료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가 43명(76.8%)으로 대다수였다. 그 밖에도 건강보험이 8명(14.3%)으로 매우 적었고,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가 미파악 된 경우도 5명(8.9%)등으로 나타났다.

(6). 주거 형태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주거형태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9>와 같다.

<표 IV-9> 주거형태

거주	사례수	백분율(%)
자택	14	25.0
전세	9	16.1
월세	9	16.1
시설	9	16.1
기타	8	14.2
미파악	7	12.5
합계	56	100

<표 IV-9>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자택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여학생 수가 14명(25.0%)을 차지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경우가 각각 9명(16.1%)이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여학생도 9명(16.1%)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 여학생의 주거형태에 비추어 가족의 소득현황을 유추해보면 중산층 이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가족의 월수입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가족 월수입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10>과 같다.

<표 IV-10> 피해자 가족의 월수입

가족의 월수입	사례수	백분율(%)
50만원 미만	16	28.6
50미만-100만원이상	18	32.1
100미만-200만원이상	14	25.0
300만원이상	1	1.8
미파악	7	12.5
합계	56	100

<표 IV-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 가정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별 월수입을 살펴본 결과, 5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이 18명(32.1%), 50만원 미만이 16명(28.6%)등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 받아야 하는 가정이 많았다. 1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이 14명(25.0%)으로 나타났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명(1.8%)으로 매우 적었다.

(8) 부모 직업

지적장애 여학생의 부모직업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11>과 같다.

<표 IV-11> 부모 직업

직업 유형	부		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노무직	18	32.2	4	7.1
무직	8	14.3	18	32.2
농어업	7	12.5	10	17.9
자영업	4	7.1	4	7.1
서비스 및 판매업	4	7.1	4	7.1
기타	2	3.6	1	1.8
전문직	1	1.8	0	0.0
사무직	1	1.8	1	1.8
미파악	11	19.6	14	25
합계	56	100	56	100

<표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아동센터에 지적장애 여학생 부모의 직업 유형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으로 노무직이 18명(32.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무직 8명(14.3%), 농어업 7명(12.5%), 자영업 및 서비스 판매업이 각각 4명(7.1%) 등으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기타 2명(3.6%), 전문직 1명(1.8%), 사무직 1명(1.8%) 순위로 드러났다.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무직이 18명

(32.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농어업 10명(17.9%), 노무직, 자영업, 서비스 및 판매업 등이 각각 4명(7.1%)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1명(1.8%), 사무직 1명(1.8 %) 순위로 드러났다.

(9) 부모 학력

지적장애 여학생의 부모학력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12>과 같다.

<표 IV-12> 부모 학력

직업	부		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초졸	15	26.8	16	28.6
중졸	11	19.6	9	16.1
고졸	16	28.6	15	26.8
대졸	6	10.7	1	1.8
미파악	8	14.3	15	26.7
합계	56	100	56	100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 아버지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16명(28.6%), 초졸 15명(26.8%), 중졸 11명(19.6%), 대졸 6명(10.7%) 순위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초졸 16명(28.6%), 고졸 15명(26.8%), 중졸 9명(16.1%), 대졸 1명(1.8%) 순위로 드러났으며, 부모 학력에 대한 정보가 미파악 된 경우도 아버지 8명(14.3%), 어머니 15명(26.7%) 등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요약하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자 연령으로 만 13세 미만의 지적장애 여학생이 29명(51.7%)이였고 13세 이상의 지적장애 여학생의 수도 27명(48.3%)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자 56명 중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29명(51.7%)이었다. 지적장애 여학생

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전남이 31명(55.4%)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지적장애 여학생의 가족형태를 보면 친부모가 주 양육자인 양부모가족과 생활하는 지적장애 여학생이 26명(46.5%)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여학생의 의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가 43명(76.8%)으로 대다수였다. 주거형태로는 자가 주택이 14명(25.0%)로 가장 많았다. 지적장애 여학생의 가구별 경제적 상태를 살펴보면 5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이 18명(32.1%), 50만원 미만이 16명(28.6%)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부모의 직업으로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보면 노무직이 18명(32.2%), 어머니의 직업으로 무직이 18명(32.2%)으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버지가 16명(28.6%)으로 많았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수가 16명(28.6%)으로 나타났다.

3) 가해자 현황

(1) 가해자 수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 한 가해자 수의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13>과 같다.

<표 IV-13> 가해자 수

가해자 수	사례수	백분율(%)
1명	47	83.9
2명	1	1.79
3명	2	3.58
4명	3	5.36
5명	1	1.79
8명	1	1.79
9명	1	1.79
합계	56	100

<표 IV-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학생별로 가해자의 수를 분석한 결과 학생 한명에 한명인 경우, 즉 가해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경우는 47명(83.9%)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학생 1명에 대해 2명 이상의 가해자가 가해를 한 경우는 9명(16.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 수가 8명, 9명인 사례는 생활시설 및 동네에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경우로 피해의 정도도 심각하였다.

(2) 연령

H 아동센터에 접수한 지적장애 여학생을 가해한 가해자 연령을 제시하면 <표 IV-14>과 같다.

<표 IV-14> 가해자 연령

연령	사례수	백분율
10세 미만	1	1.1
11~20세	20	22.4
21~30세	13	14.6
31~40세	14	15.7
41~50세	22	24.7
51~60세	11	12.8
61~70세	2	2.2
71~80세	1	1.1
미파악	5	5.4
합계	89	100

<표 IV-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가해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1~50세 22명(24.7%), 11-20세 미만이 20명(22.4%), 31~40세, 21~30세와 51~60세 각각 14명(15.7%), 13명(14.6%), 11명(12.8%)으로 나타났으며, 10세 미만도 1명(1.1%)으로 드러났고 71세 이상 고령의 가해자도 1명

(1.1%)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위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층은 성인뿐만 아니라 연소자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와의 관계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15>과 같다.

<표 IV-15> 피해자와의 관계

관계	사례수	백분율(%)
아는 사람	62	70.0
모르는 사람	23	26.0
미파악	4	4.0
합계	89	100

<표 IV-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2명(70.0%),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3명(26.0%)으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지적장애 여학생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의한 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4) 직업

H 아동센터에 접수한 가해자의 직업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16>과 같다.

<표 IV-16> 가해자 직업

직업	사례수	백분율
무직	21	23.6
학생	21	23.6
서비스 및 판매업	9	10.1
노무직	8	9.0
농어업	6	6.8
기타	6	6.8
자영업	4	4.5
준전문직	3	3.4
사무직	2	2.2
전문직	2	2.2
미파악	7	7.8
합계	89	100

<표 IV-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과 학생이 각각 21명(23.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서비스 및 판매직 9명(10.1%), 노무직 8명(9.0%), 농어업 6명(6.8%)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영업, 준전문직, 사무직, 전문직 각각 4명(4.5%), 3명(3.4%), 2명(2.2%), 2명(2.2%)등의 순위를 보였다. 지적장애 학생의 성폭력 가해자는 특정한 계층이나 직업과 무관함을 시사하고 있다.

(5) 장애유무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을 가해한 가해자의 장애유무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17>과 같다.

<표 IV-17> 가해자 장애 유무 현황

장애 유무	사례수	백분율(%)
없음	86	96.7
미파악	3	3.3
합계	89	100

<표 IV-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가해자 중 장애가 없는 경우 86명(96.7%)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장애유무에 대한 정보가 미파악 된 경우도 3명(3.3%)등 으로 나타났다.

(6) 음주, 약물 사용 여부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력 가해 당시 음주, 약물 사용 여부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18>과 같다.

<표 IV-18> 가해자 음주·약물 사용 여부

사용 여부	사례수	백분율(%)
없음	78	87.7
있음	8	8.9
미파악	3	3.4
합계	89	100

<표 IV-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가해당시 음주, 약물 사용 여부를 파악한 결과 음주 및 약물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는 78명(87.7%)으로 대다수였다. 음주 및 약물 사용을 한 경우는 8명(8.9%)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대부분 음주 및 약물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가해를 한다는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위 결과를 요약하면 피해 학생별로 가해자의 수를 분석한 결과 학생 한명에 한명인 경우, 즉 가해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경우는 50명(86.3%)으로서 대다수였다. 가해자 연령을 보면 41세부터~50세까지가 22명(24.7%)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2명(70.0%)으로 아는 사람에 의해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가해자의 직업으로 무직과 학생이 각각 21명(23.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가해자 중 장애가 없는 경우는 86명(96. 7%)으로

대다수였다.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력 가해 시 음주·약물 사용 여부를 보면 음주 및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78명(87.7%)으로 높은 비율을 차치했다.

4) 성폭력 피해 현황

(1) 성폭력 유형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유형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19>과 같다.

<표 IV-19> 성폭력 유형

유형	사례수	백분율
강간	24	42.9
강제추행	23	41.0
추행	6	10.7
기타	2	3.6
미파악	1	1.8
합계	56	100

<표 I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범죄에 관한 형법상의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피해유형을 분석 한 결과 강간 24명(42.9%), 강제추행이 23명(41.0%)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추행 6명(10.7%), 기타 2명(3.6%), 미파악(1.8%)등으로 나타났다.

(2) 가해 유형

지적장애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 가해 유형을 제시하면 <표 IV-20>과 같다.

<표 IV-20> 가해행위 유형

유형	사례수	케이스 백분율(%)	반응 백분율(%)
성기삽입	50	89.3	31.3
성기추행	44	78.6	27.6
신체추행	34	60.7	21.2
성기만짐 강요	10	17.8	6.25
피해자 성기노출	4	7.14	2.50
기타	4	7.14	2.50
키스	3	5.35	1.87
항문삽입	3	5.35	1.87
펠라티오	3	5.35	1.87
사건목격	2	3.57	1.25
가해자 성기노출	1	1.78	0.62
커니링거스	1	1.78	0.62
음란물 노출	1	1.78	0.62
합계	160	285	100

<표 IV-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해자가 지적장애 여학생을 강간한 경우가 50명(케이스 백분율: 89.3%; 반응 백분율: 31.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였고, 다음으로 성기를 만지는 성추행 44명(케이스 백분율: 78.6%; 반응백분율: 27.6%), 성기 이외에 유방이나 둔부를 빨거나 만지는 신체추행이 34명(케이스 백분율: 60.7%; 반응 백분율: 21.2%), 성기만짐 강요 10명(케이스 백분율: 17.8%; 반응 백분율 6.25%), 키스, 펠라티오, 항문성교는 각각 3명(5.35%)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3) 피해 장소

H 아동센터에 접수한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장소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21>과 같다.

<표 IV-21> 피해 장소

피해 장소	사례수	백분율
피해자 집	15	26.8
가해자 집	11	19.6
공공장소	11	19.6
외진 곳	7	12.5
숙박업소	4	7.1
기타	2	3.6
시설	1	1.8
미파악	5	9.0
합계	56	100

<표 IV-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장소를 보면 피해자 집이 15명(26.8%)으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난 경우도 11명(19.6%),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11명(19.6%)을 차지했다. 가해자가 지적장애 여학생을 유인하여 산, 빈 건물 같은 외진 곳 또는 숙박업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각각 7명(12.5%), 4명(7.1%)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적장애 여학생의 경우 피해자 집, 가해자 집, 공공장소, 외진 곳 등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다.

(4) 폭행 및 협박 동반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시 폭행 및 협박 동반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22>과 같다.

<표 IV-22> 폭행 및 협박 동반

구분	사례수	백분율(%)
없음	39	69.6
협박	7	12.5
폭행	4	7.1
협박 및 폭행	1	1.8
미파악	5	9.0
합계	56	100

<표 IV-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시 폭행 및 협박이 없는 경우가 39명(69.6%)이며, 협박만 당한 경우는 7명(12.5%), 폭행만 당한 경우는 4명(7.1%),폭행 및 비밀유지와 관련된 협박이 있는 경우가 1명(1.8%)으로서 매우 적었다.

(5) 음주 및 약물사용 강요 여부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당시 음주 및 약물 사용 강요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23>과 같다.

<표 IV-23> 피해자 음주 및 약물사용 강요 여부

강요 여부	사례수	백분율(%)
없음	50	89.3
있음	2	3.6
미파악	4	7.2
합계	56	100

<표 IV-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당시 음주 및 약물사용 강요 여부를 살펴보면 음주 및 약물사용 강요가 없는 경우가 50명(8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음주 및 약물사용 강요가 있는 경우 2명(3.6%)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6) 가해자의 유인책 동반

지적장애 여학생을 가해자가 유인하는 유인책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24>과 같다.

<표 IV-24> 가해자의 유인책 동반

유인책 동반	사례수	백분율(%)
없음	43	76.8
돈	4	7.1
음식물	4	7.1
미파악	5	9.0
합계	56	100

<표 IV-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을 가해자가 유인한 방법을 살펴보면 유인책이 없는 경우가 43명(76.8%)인 것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돈, 음식물로 유인하는 경우가 각각 4명(7.1%)으로 나타났다.

(7) 피해 횟수

지적장애 여학생이 성폭력 당한 피해 횟수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25>과 같다.

<표 IV-25> 피해 횟수

횟수	사례수	백분율(%)
단회	11	19.7
2회 ~ 5회 이하	24	42.9
6회 이상	16	28.6
미파악	5	9.0
합계	56	100

<표 IV-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 이상 5회 이하의 피해가 24명(42.9%), 6회 이상 피해를 당한 경우 또한 16명(28.6%)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단회 피해가 11명(19.7%)을 차지했다.

(8) 피해지속 기간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지속 기간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26>과 같다.

<표 IV-26> 피해지속 기간

횟수	사례수	백분율(%)
단회	16	28.6
1년 미만	23	41.1
1~2년 사이	5	8.9
2년 이상	7	12.5
미파악	5	9.0
합계	56	100

<표 IV-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당한 횟수가 1회인 경우가 16명(28.6%), 1년 미만인 경우가 23명(41.1%), 1년 이상이 12명(21.4%)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여학생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피해 횟수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경우도 5명(9.0%)으로 파악되었다.

(9) 피해 후 인지기간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후 인지기간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27>과 같다.

<표 IV-27> 피해 후 인지기간

인지기간	사례수	백분율(%)
사건당일	11	19.6
1달 이내	10	17.9
1년 이내	17	30.4
1년 이상	13	23.2
미파악	5	8.9
합계	56	100

<표 IV-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타인에게 알려 피해 상황이 인지되는데 걸린 시간은 1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피해 사실을 발견한 사례수가 13명(23.2%)을 차지했으며, 한 달 이내도 10명(17.9%), 사건당일 발고되는 비율도 11명(19.6%)으로 나타났다.

(10) 최초 인지자

지적장애 여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최초 인지자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28>과 같다.

<표 IV-28> 최초 인지자

인지자	사례수	백분율(%)
신고의무기관종사자	23	41.1
모	12	21.4
부	7	12.4
친족	4	8.9
이웃	2	3.6
기타	2	3.6
미파악	6	9.0
합계	56	100

<표 IV-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신고의무기관종사자에 의해 최초로 피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가 23명(41.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어머니에 의해 발견된 경우는 12명(21.4%), 교사가 발견한 경우도 10명(17.9%), 아버지 7명(12.4%), 친족 4명(8.9%), 이웃 2명(3.6%), 기타 2명(3.6%)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11) 인지경위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인지경위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29>과 같다.

<표 IV-29> 인지경위

인지경위	사례수	백분율(%)
피해자의 표현	47	83.9
인지자의 관찰	2	3.6
현장목격	1	1.8
기타	1	1.8
미파악	5	8.9
합계	56	100

<표 IV-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성

폭력 피해 사실을 스스로 보고한 경우는 47명(83.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인지자의 관찰에 의해 발견 된 경우는 2명(3.6%), 현장에서 목격된 경우도 1명(1.8%)으로서 매우 적었다.

위 결과를 요약하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유형으로 강간이 24명(42.9%), 강제추행이 23명(41.0%)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왔으며, 성폭력 피해 장소를 보면 피해자의 집이 15명(26.8%)으로 가장 많았다.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시 폭행·협박 동반 여부를 살펴보면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가 39명(69.6%)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 당시 음주 및 약물 사용 강요 여부를 보면 음주 및 약물사용 강요가 없는 경우가 50명(8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적장애 여학생을 가해자가 유인하는 방법으로는 유인책이 없는 경우가 43명(76.8%)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적장애 여학생이 성폭력 당한 횟수로는 2회 이상 5회 이하의 피해가 24명(42.9%), 피해당한 횟수가 1회인 피해자의 피해당한 지속기간인 경우가 16명(28.6%),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타인에게 알려 피해 상황이 인지되는데 걸린 시간이 1년 이상 지난 후에야 피해 사실을 발견한 피해가 17명(30.4%)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신고의무기관종사자에 의해 최초로 피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가 23명(41.1%), 성폭력 피해 사실을 스스로 보고한 경우는 47명(83.9%)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5) 수사 및 재판 실태 현황

(1) 고소 현황

지적장애 여학생의 고소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30>과 같다.

<표 IV-30> 고소 현황

고소여부	사례수	백분율(%)
내원 전 고소	33	37.1
내원 후 고소	15	16.9
고소안함	38	42.7
미파악	3	3.3
합계	89	100

<표 IV-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밝혀 고소가 된 경우는 48명(54.0%)을 차지했으며, 고소 자체를 안 한 사례수도 38명(42.7%)으로 상당 수를 차지했다. 고소율이 낮은 이유는 지적장애 여학생이 피해 사실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과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수사 현황

지적장애 여학생의 수사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31>과 같다.

<표 IV-31> 수사 현황

구분	사례수	백분율(%)
불구속	32	66.7
구속	13	27.0
가해자 파악 안됨	2	4.2
미파악	1	2.1
합계	48	100

<표 IV-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현황을 살펴보면 구속수사가 진행된 경우는 13명(27.0%),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된 경우는 32명(66.7%)을 차지했다.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도 2명(4.2%)이었으며, 구속여부에 대한 정보가 미파악된 경우도 1명(2.1%)이었다.

(3) 기소 여부

지적장애 여학생의 기소 여부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32>과 같다.

<표 IV-32> 기소 여부

기소 여부	사례수	백분율(%)
불기소	30	62.5
기소	15	31.2
수사진행중	1	2.1
기타(소년보호송치)	1	2.1
미파악	1	2.1
합계	48	100

<표 IV-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소현황을 살펴보면 고소된 48명중 검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는 15명(31.2%)이며, 불기소된 경우는 30명(62.5%)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1명(2.1%), 기타(소년보호송치) 1명(2.1%), 기소여부에 대한 정보가 미파악된 경우도 1명(2.1%)등으로 나타났다.

(4) 기소 내용

지적장애 여학생의 기소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33>과 같다.

<표 IV-33> 기소 내용

기소 내용	건수	백분율(%)
구공판	15	100
합계	15	100

<표 IV-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소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제기 결과 기소된 15명(100%) 모두 구공판으로 나타났다.

(5) 불기소내용

지적장애 여학생의 불기소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34>과 같다.

<표 IV-34> 불기소 내용

불기소 내용	건수	백분율(%)
혐의없음	22	74.0
죄가 안됨	6	20.0
공소권없음	1	3.0
기소중지	1	3.0
합계	30	100

<표 IV-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기소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제기 결과 불기소된 30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 없음 22명(74.0%)으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죄가 안됨 6명(20.0 %), 공소권 없음 1명(3.0%), 기소중지 1명(3.0%)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6) 기타내용

지적장애 여학생의 기타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35>과 같다.

<표 IV-35> 기타 내용

기타 내용	건수	백분율(%)
소년보호사건송치	1	100
합계	1	100

<표 IV-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타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제기 결과 기타 처분된 1명(100%)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다.

(7) 재판결과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재판 결과 현황을 제시하면 <표 IV-36>과 같다.

<표 IV-36> 재판 결과

재판 결과	건수	백분율
실형	10	58.8
집행유예	4	23.5
소년보호처분	1	5.9
무죄, 공소기각	1	5.9
미파악	1	5.9
합계	17	100

<표 IV-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공소제기 결과 실형 10명(58.8%)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 4명(23.5%), 소년보호처분 1명(5.9%), 무죄, 공소기각 1명(5.9%), 재판결과에 대한 정보가 미파악된 경우도 1명(5.9%)등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요약하면 지적장애 여학생의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밝혀 고소가 된 경우가 48명(54.0%)이며, 48명 중 구속수사가 진행된 경우로는 13명(27.0%)이였고 불구속 수사는 32명(66.7%) 등 이었다. 기소 현황을 살펴보면 고소된 48명 중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는 15명(31.2%), 불기소 된 경우는 30명(62.5%)으로 나타났다. 기소 내용을 보면 기소된 15명(100%)모두 구공판이었고, 불기소 된 30명 중 혐의 없음이 22명(74.0%)으로서 상당 부분을 차치했다. 끝으로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실형이 10명(58.8%), 집행유예 4명(23.5%), 소년보호처분 1명(5.9%)등으로 나타났다.

2.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관련변인 분석

1) 피해자 연령과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지적장애 여학생의 연령 수준과 성폭력 유형 간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면<표 IV-37>과 같다.

<표 IV-37> 피해자 연령과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성폭력피해 유형 / 연령	강간		강제추행 등		카이제곱(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13세 미만	7	29.2	21	72.4	9.856 *
13세 이상	17	70.8	8	27.6	
합계	24	100	29	100	·

* $p<0.05$.

<표 IV-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연령수준과 성폭력 피해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3세 미만의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

간보다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 13세 이상의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제추행보다는 강간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피해자 장애등록 여부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지적장애 여학생의 장애등록 여부와 성폭력 유형 간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면<표 IV-38>과 같다.

<표 IV-38> 장애등록 여부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성폭력피해 유형 / 장애등록여부	강간		강제추행 등		카이제곱(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등록	9	37.5	19	65.5	4.137 *
등록 안 함	15	62.5	10	34.5	
합계	24	100	29	100	·

* $p<0.05$.

<표 IV-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장애등록 여부와 성폭력 피해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장애등록을 한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 장애등록을 안한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제추행보다는 강간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피해자 거주 지역과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지적장애 여학생의 거주지역과 성폭력 정도 간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IV-39>와 같다.

<표 IV-39> 거주 지역과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성폭력피해 유형 / 거주지역	강간		강제추행 등		카이제곱(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광주	11	45.8	12	41.4	.106
전남· 전북	13	54.2	17	58.6	
합계	24	100	29	100	·

<표 IV-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거주지역과 성폭력 피해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광주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제추행 보다는 강간을 당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데 비해, 전남·전북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역과 성폭력 피해 정도간의 관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 장소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지적장애 여학생의 피해 장소와 성폭력 정도 간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면<표 IV-40>과 같다.

<표 IV-40> 피해 장소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성폭력피해 유형 / 피해장소	강간		강제추행 등		카이제곱(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피해자의 집	5	20.8	10	34.5	2.013
가해자의 집	6	25.1	4	13.8	
공공 장소	4	16.6	6	20.7	
외진 곳	9	37.5	9	31.0	
합계	24	100	29	100	·

<표 IV-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피해 장소와 성폭력 피해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피해자의 집에서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 가해자의 집에서는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제추행보다는 강간을 당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공공장소에서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고, 외진 곳에서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간과 강제추행이 같게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장소와 성폭력 피해 정도간의 관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피해자의 가족형태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지적장애 여학생의 가족형태와 성폭력 유형 간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면<표 IV-41>과 같다.

<표 IV-41> 가족형태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성폭력피해 유형 / 가족형태	강간		강제추행 등		카이제곱(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양부모 가족	8	33.3	16	55.2	2.749
한부모 가족	6	25.0	6	20.7	
시설 거주 등	10	41.7	7	24.1	
합계	24	100	29	100	·

<표 IV-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가족형태와 성폭력 피해 유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양부모 가족의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 한 부모 가족과 함께 사는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간과 강제추행이 동일한 비율로 나왔으며, 시설거주 등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제추행보다는 강간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형태와 성폭력 피해 정도간의 관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피해자 가해자와의 관계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지적장애 여학생인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성폭력 정도 간에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면<표 IV-42>과 같다.

<표 IV-42> 피해자 가해자와의 관계와 성폭력 유형과의 관계

성폭력피해 유형 / 가해자와의 관계	강간		강제추행 등		카이제곱(χ^2)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아는 사람	18	75.0	18	62.1	1.008
모르는 사람	6	25.0	11	37.9	
합계	24	100	29	100	·

<표 Ⅳ-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여학생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성폭력 피해정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간과 강제추행 비율이 동일한데 비해,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성폭력 피해 정도간의 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이 연구에서는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실태 및 관련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5~2007년, 여성부 산하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사례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지적장애 여학생인 사례 56건을 분석하였다. 이 자료 분석 결과를 기초로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실태와 관련 변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실태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 대상 성폭력 사례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신고 접수는 주로 신고의무기관종사자가 신고하였고, 접수방법은 주로 전화였으며 타기관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신고접수 현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주된 접수자가 부모가 아니라 신고의무기관종사자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장애 여학생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주로 부모가 신고하는데 반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부모 보다도 신고의무기관종사자가 주로 신고를 하였다. 그것은 지적장애 여학생의 부모들이 자녀의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신고의무기관종사자에 의해 인지되어 부모의 동의를 받아 H 아동센터에 신고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지적장애 여학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의 학생과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학생이 성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비슷했고, 거주 지역에 있어서 광주와 전남지역은 많았으나 전북지역은 1건에 불과했다. H아동센터는 13세 미만 아동의 성폭력과 지적장애인 사례를 상담하는 기관이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적장애 여학생의 경우 13세 미만의 학생뿐만 아니라 13세 이상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의 성폭력 사례도 많다는 점에

서 볼 때 13세 이후의 지적장애여학생을 위한 성폭력 상담기관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전북 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사례가 1건에 불과한 것은 H 아동센터가 광주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지역의 신고의무기관종사자가 지리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H 아동센터와 같은 기관이 최소한 각 시·도별로 각각 한 기관씩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현 시점에서 H 아동센터는 광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광주나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 대한 기관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전북지역에 있는 신고의무기관종사자가 H 아동센터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장소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공공장소, 외진 곳, 숙박업소 등 모든 장소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가 지적장애 여학생을 유인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돈, 음식물 등이었다.

지적장애 여학생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장소가 성폭력 피해 장소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을 피하는 방법으로 성폭력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장애 여학생이 돈이나 음식물에 의해 유인된다는 점에서 보면 청소년기의 지적장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박용숙, 박승희, 2002).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지적장애여 학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모는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력의 발견과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 지적장애 여학생과 성폭력 유형과의 관련변인

2005-2007년 H 아동센터에 성폭력 피해 사례로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연령, 장애등록 여부, 거주 지역, 피해 장소, 가족형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이

각각 성폭력 피해유형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적장애 여학생의 연령과 장애등록 여부는 각각 성폭력 피해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거주 지역, 피해 장소, 가족형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각각 성폭력 피해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 아동센터에 성폭력 피해 사례로 접수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연령과 피해유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3세 미만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간보다 강제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13세 이상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제추행보다 강간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연령에 따라 성폭력 피해정도가 다른 것은 성과 관련된 지적장애 여학생의 신체적 발달과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 여학생의 장애등록 여부와 성폭력 피해 유형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록을 한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해, 장애등록을 안한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제추행보다는 강간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장애등록을 한 지적장애 여학생이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비율이 높고,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지적장애 여학생이 강제추행 보다는 강간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교차분석 결과만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 장애등록 여부와 지적장애의 정도, 부모에 교육 및 소득수준 등 다른 관련 변인들이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호남지역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실태와 관련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5-2007년 3년 동안 여성부 산하기관인 H 아동센터에 접수된 19세 미만의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폭력 실태와 관련변인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 아동센터의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력 사례는 주로 신고의무기관종사자에 의해 전화를 통해 신고되었으며, 타기관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뢰 되었다.

둘째, H 아동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 연령으로 만 13세 미만의 지적장애 여학생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례가 많았으며, 전남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여학생 및 친부모가 주 양육자인 양부모가족과 생활하는 지적장애 여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였으며, 월평균 가족소득도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많은 비율로 드러났고, 아버지의 직업으로 노무직, 어머니의 직업으로 무직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셋째, H 아동센터에 접수된 가해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가해자와의 관계는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더 많았다. 성폭력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과 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가해 할 때 음주 및 약물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넷째,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유형으로 강간이 강제추행보다 약간 더 많았으며 피해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 많았고, 성폭력 피해 시 폭행 및 협박이 없는 비율이 높았다.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력하기 위해 가해자가 유인하는 유인책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1년 이상 지나서야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높았고, 신고의무기관종사자에 의해 최초로 성폭력 피해사실이 발견된 경우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섯째, 지적장애 여학생의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사를 밝혀 고소된 가해자는48명이였고, 가해자 48명 중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가해자는 15명, 불기소된 경우는 30명으로 나타났다. 기소 처분된 15명에 대한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실형 10명, 집행유예 4명, 소년보호처분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성폭력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거주 지역, 피해 장소, 가족형태, 가해자와의 관계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연령 및 장애등록 여부는 각각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13세 이상의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제추행보다 강간을 당하는 사례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데 비해, 13세 미만의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간보다 강제추행을 당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장애등록을 한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비율이 더 높은데 비해,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지적장애 여학생은 강제추행보다 강간을 당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이 연구에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적장애인들은 피해자 자신이 분명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사건화 된 후에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조사기관에서의 배려가 전무한 실정에서는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게 하는 등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찰로부터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지적장애인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성폭력을 당한 지적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피해자 에 대한 보호시설 마련 등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 지속적인 장애인 인권운동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상담기관과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긴밀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한다면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기관과 병원, 경찰서,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체계가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예방과 피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그 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가 지속적이고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여학생의 경우 일정기간 교육 후에도 피해를 다시 당하거나 성매매로 전략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적장애 여학생의 특성상 쉽게 피해를 당하며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피해 특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적장애인들의 발달단계와 성적욕구를 고려하여 지적장애인 개개인에 알맞은 수준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며,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적절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특수성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적장애인의 전문상담자가 양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인 성폭력 피해자와는 달리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자는 단회 피해보다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당해 후유증이 심각하므로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발견과 지원 및 치료적 접근이 가능한 전문센터 설치와 전문요원이 배출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강정혜 (2002). **경도 정신지체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응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서울.

김인숙 (2000). **초등학교 학부모와 교사의 성교육에 대한 실태, 태도 및 요구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강원도.

김영서 (2001).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서울.

김원홍 외 (2000). 오늘의 여성학. 3판.

김재엽·이서원 (1998).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성폭력특별법의 개정 방향,** 한국청소년연구.

경찰청 (2005). 경찰백서.

노희정 (2000).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성교육프로그램의 실제. 지적장애인의 성(교사용), 15-16.

박효경 (2002). **정신지체아 성교육의 필요성 및 실천정도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도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내 정신지체 학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주.

박용숙, 박승희 (2002). 정신지체 여학생을 위한 상황중심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6(4), 1-27.

박옥임 외 (2004). **성폭력전문상담교육교재.** 서울: 도서출판 시그마프레스.

박현지 (2001).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지방안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 대학원, 서울.

박용숙 (2002). **정신지체 여학생을 위한 상황중심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발표. 아동청소년성보호과, 2.

박종선 (2002).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신혜수 (1994). **성폭력과 여성장애인.** 서울: 장애우권익연구소.
서울YMCA (2000). 성교육지침서, **청소년성교육상담실,** 121-123.
송소현 (2007). **정신지체학생 성교육관련 국내 연구논문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광주.
신현달 (1996). **정신지체아의 성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미간행 석사학원 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전북.
안동현 (1994). **친족강간의 평가와 대책,**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이애란 (2000). **정신지체 청소년 어머니의 자녀의 성에 대한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광주.
이은숙 (2004).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전북.
임선명 (2003). **성인 정신지체인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예자 (2000).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3.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02). 여성장애인가정폭력, 성폭력실태조사,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이예자 (2000a).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 및 정책적 제안: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
이혜경 (2002). 장애인성교육 사례발표회,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이현혜 (2003). **정신지체인의 성행동 실태와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대구.
조 옥 (2000a).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처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조 옥 (2000b). **여성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정책적 대안,** 여성장애인 인권과 자립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조 옥 (2001a).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피해실태와 그 대책,** 제1기 여성장애인 상담

학교 자료집.

조국현 (2006).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형사법적 대응 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서울.

정진옥 (1996). **정신지체여성의 성지식, 성적태도 및 성적경험에 관한 일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장비 (2000). 성교육 특집호, 정신지체 연구 5권 광주: 엠마우스복지관.

채연아 (2003).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특성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전남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순천대학교 대학원, 순천.

최영애 (2000a). **성폭력 실태와 대책,** 성폭력전문상담교육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

최영애 (2000b).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피해자학 연구**, 제8호, 한국피해자학회.

최유진 (2006).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하숙자 (1998). **여성정신지체인에 대한 성폭력 사례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41-42.

한혜경 (2007). **초등학생의 성의식과 성폭력 현황.**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상담현황 http://www. sister.or.kr.

한국여성개발원 (2000). 성의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연구. 서울. 30.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91-92.

한겨레 (2000. 7. 28). 장애인과 더불어- 아름다운 성과 사랑.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성폭력에 대한 서울 심포지엄 세미나자료집,**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성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자료집,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5). 2004 성폭력상담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성폭력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서울.

Amir, M. (1971). Partterns of forcible rape. Chicago: Univercity of chicago Press.

Sobsey, D, & Varnhagen, C. (1988).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ttawa: Health and Welfare Canada..

Monat-Haller, R K (1992). Understanding & Expressing Sexuality. Responsible Choices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us H. Brookes-Publishing co.

Marilyn M. Stromsness (1980). 정신지체여성이 겪은 성폭해에 대하여 「빼앗긴 목소리를 찾아서-여성장애우의 질곡과 희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7). 166.